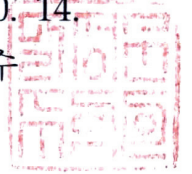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7
----------	------

제출일자: 2019. 10. 14.

제 출 자: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5.2.16.> 으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만 가격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 도 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도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하고자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 : 2019. 9. 10. ~ 9. 30.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 기관 이라 한다)” 을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감정기관에서” 를 “감정평가업자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③ (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에 따른 총량의 장부가격 총액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u>영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u> ⑤ 제4항에 따른 <u>감정기관에서</u>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⑤ -----감정평가업자가----- -----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